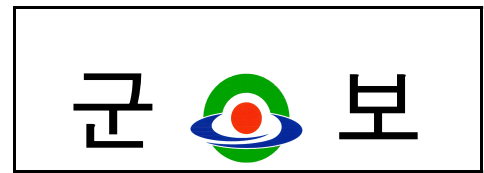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93호 2019. 10.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5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53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54호)

공 고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114호)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11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서로 1992 외 11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 여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1183-24 외 319건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 도 열 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제조사팀(☎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의 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제4항에 의거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에 의거 도로구간을 폐지하였거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제2항에 의거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 등)을 폐지일로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를 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경서로 1328 외 15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 여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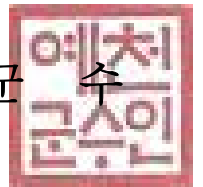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안 제4조 ~ 제10조)

- 군수는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실시할 수 있음
- 운영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음
- 운영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 어린이집을 평가 및 지도·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비용의 보조 등(안 제11조 ~ 제14조)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을 정함
- 보육아동의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사유 발생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제28조, 제6조, 제4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연 212,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14, 팩스 : 054-650-6360

- 전자우편 : hugepine062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

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제4조(취약보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육교직원)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탁)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위탁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서면 상 협약으로써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
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8조(운영위탁 평가)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
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수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를 위탁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11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차량운영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7. 우수 농산물 급식·간식비

8. 냉·난방비

9. 영유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제1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4장 보 칙

제15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정함.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호 제2항에 의거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지원사업명	예산액	산출근거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30,000,000원	2,000,000원 × 5명 × 3개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9,200,000원	100,000원 × 91명 × 12개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30,000,000원	100,000원 × 150명 × 2회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간식비 지원	78,000,000원	5,000원 × 1,300명 × 12개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5,800,000원	100,000원 × 43개소 × 6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대체교직원 인건비	30	30	30	30	30	15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9.2	109.2	109.2	109.2	109.2	546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30	30	30	30	30	150
	우수 농산물 간식비	78	78	78	78	78	390
	냉·난방비	25.8	25.8	25.8	25.8	25.8	129
	소계(b)	273	273	273	273	273	1,365
□ 총 비용(a-b)		-273	-273	-273	-273	-273	-1,3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273	273	273	273	273	1,365
민간							
기타							
합계		273	273	273	273	273	1,36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사회복지서기 이한솔(054-650-621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어린이집 운영지원 소요예산 : 273,000천원 정도

지원사업명	예산액	산출근거
계	273,00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30,000,000원	2,000,000원 × 5명 × 3개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9,200,000원	100,000원 × 91명 × 12개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30,000,000원	100,000원 × 150명 × 2회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간식비 지원	78,000,000원	5,000원 × 1,300명 × 12개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5,800,000원	100,000원 × 43개소 × 6개월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18.]

(제정) 2006.05.17 조례 제1827호

(일부개정) 2009.04.09 조례 제1906호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전문개정) 2015.03.05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

(일부개정) 2017.09.18 조례 제2238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54-650-69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2017.9.18.>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8.>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7.9.18.>

제7조(무상보육)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개정 2017.9.18.>

제9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18.>

④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한다. <개정 2017.9.18.>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5.3.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명칭란 중 “예천군립하리어린이집”을 “예천군립은풍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란 중 “하리면 은풍로 88”을 “은풍면 은풍로 88”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2017.9.1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의 취소) “내용은 별지 작성”
-------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0. 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6. 2. 3., 2017. 3. 14., 2017. 12. 19., 2018. 1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전문개정 2007. 10. 17.]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전문개정 2007. 10. 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 10. 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25조(국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8. 5., 2015. 1. 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50-6214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전부를 상위법령 및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안 제2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함.

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및 운영위탁(안 제3조 ~ 제4조)

-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원칙이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음.
- 운영위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에 따라 채점하며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3.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14, 팩스 : 054-650-6360
- 전자우편 : hugepine062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 한 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 례」(이 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 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 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 을 갖춘 자여야 한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 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 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하 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 간 만료 로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 청하여야 한 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약정서

예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예천군 ○○읍·면 ○○길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예천군 ○○읍·면 ○○길 ○○에 둔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간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을”이 임면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을”과 “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을”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

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본 약정, 준용규정 및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어린이집 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수탁 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④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3조(감독) “갑”은 매년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 천 군 수 ㉠

(을) 예천군 읍·면 길

○ ○ ○ ㉠

제 호

어 린 이 집 위 탁 계 약 증 서

- 명 칭 :
- 소 재 지 :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어린이집의 원장의 성명 :
- 어린이집의 원장의 생년월일 :
- 위 탁 기 간 :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8.>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

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50-6214